

의안번호	2200371
의 퇴 인	오기형의원
회 답 일	2024. 6.27.
추 계 번호	24D073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¹⁾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의 출연금 증가가 예상되고²⁾,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 현황 조사를 위한 준비행위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4,000만원, 2029년 1억 9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억 7,600만원(연평균 9,52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협의회 설치 (안 제7조)		34	34	34	34	136	27
서면실태조사 (안 제25조)		75	75	75	75	300	6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 현황 조사를 위한 준비행위 (안 부칙 제2조)	40					40	8
합 계	40	109	109	109	109	476	95

1) 안 제2조(정의)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거래와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법인으로 하고, 제4항에 따라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비고
1	안 제7조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³⁾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협의회를 둠	의무규정
2	안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7조(시정명령), 제18조(시정권고), 제19조(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법 위반 혐의 조사, 위반행위의 중지, 재발 방지 등의 조치, 시정방안 마련, 동의의결 등 처리	재량규정
3	안 제25조(서면실태조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함	의무규정
4	안 부칙 제2조(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현황 조사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 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3) 안 제2조(정의) 4.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매출액을 산정한다.

나.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 총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판매금액을 산정한다.

5.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2	안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7조(시정명령), 제18조(시정권고), 제19조(동의의결)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정명령, 시정권고, 동의의결 등 처리 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존 인력 및 예산 범위 안에서 수행 가능
3	안 제25조(서면실태조사)	○	
4	안 부칙 제2조(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현황 조사를 위한 준비행위)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 부칙 제2조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 현황 조사를 위한 준비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에는 준비행위를 실시하고, 향후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협의회 설치(안 제7조)

-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협의회를 두는 경우 매년 약 3,400만원의 정부 출연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추계 방법은 위원수에 회의수당 및 연간 회의 개최횟수를 곱하여 추정함
- (현황) 최근 3년간(2021~2023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처리건수 및 연간 개최회의수, 예산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음

[표 2]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현황

(단위: 명, 건, 백만원)

	조정신청사건 처리건			연간 전체회의 개최횟수			연간 소요예산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054	922	1,267	16	12	12	19	23	23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483	425	575	11	11	16	24	31	3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863	678	929	11	14	19	29	31	31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25	28	26	2	2	8	11	11	11
약관분쟁조정협의회	427	214	278	11	6	9	13	31	31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84	62	76	8	5	7	13	18	18
합 계	2,936	2,329	3,151	59	50	71	109	145	145
평 균	489	388	525	10	8	12	18	24	24

주: 연간 소요예산은 해당연도 분쟁조정사업비 중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참석비 및 안건검토비로 편성된 예산임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2024.6)

- (위원 수) 안 제7조제2항에서 협의회의 위원수는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 (회의수당) 회의수당은 기존의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사례를 준용하여 위원장 40만원, 위원은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연간 회의 개최횟수) 연간 회의 개최횟수는 기존의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사례를 참조하여 전체회의는 10회(9명)로 가정하며, 소회의는 6회(3명)로 구분함
 - 안 제9조에서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9명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위원장)4),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4) 안 제7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회의”)로 구분하고 있음

- 전체회의 개최횟수는 연간 10회로 가정함(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3개년 평균인 10회로 가정)
- 소회의 개최횟수는 연간 6회로 가정함(2023년 기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간 소회의 5회,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간 소회의 7회의 평균인 6회로 가정)
- (소요비용) 협의회 설치 시 소요비용은 연간 3,400만원으로 추정됨
 - (전체회의) 2,800만원(위원장 1명×40만원×10회 + 위원 8명×30만원×10회)
 - (소회의) 300만원(위원장 1명×40만원×3회 + 위원 2명×30만원×3회)

[표 3] 협의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전체회의	-	28	28	28	28	112
소회의	-	6	6	6	6	24
합 계	-	34	34	34	34	136

나. 서면실태조사(안 제25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매년 7,5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면실태조사 중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와 유사한 사례인 가맹분야 및 대규모유통업 분야 서면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2023년 7,500만원, 2024년에도 7,500만원으로 이와 동일하게 2026년부터 매년 7,500만원으로 추정함

[표 4]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서면실태조사		75	75	75	75	300

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 현황 조사를 위한 준비행위(안 부칙 제2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시행 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추계 첫해에만 4,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이 법 시행 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현황 조사를 위하여 시장현황 기초자료 구축이나 방법론 연구 등을 실시한다고 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사 사례를 참조하여 추계 첫해인 2025년에 4,000만원으로 추정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및 품질평가'사업의 내역사업인 '부가통신시장 실태조사 기초자료 구축(부가통신 통계 자료 수집)' 예산 4,000만원(2020년)을 고려하여 이와 동일하게 추계

[표 5] 시장 현황 조사를 위한 준비행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전체회의	40					40

라. 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협의회를 설치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 현황 조사를 위한 준비행위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4,000만원, 2029년 1억 9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억 7,600만원(연평균 9,52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협의회 설치 (안 제7조)		34	34	34	34	136	27
서면실태조사 (안 제25조)		75	75	75	75	300	6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 현황 조사를 위한 준비행위 (안 부칙 제2조)	40					40	8
합 계	40	109	109	109	109	476	95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